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시설 기준 정보

기 관 명	의료법인 인경의료재단 홍익요양원(대표이사 김동대)		
소 재 지	경남 양산시 북안남6길 6	전 화	055-912-7550
지 정 일 자	2025년 10월 27일	팩 스	055-912-7550
시 설 종 류	노인요양시설	입 소 정 원	99명
입 소 대 상	1) 노인장기요양법 제15조에 따른 입소자 중 시설 급여 대상자 ① 장기요양 1~2등급 ② 장기요양 3~5등급자 중 불가피한 사유, 치매 등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받은 자 2) 지자체의 요청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입소를 승인하는 자 3) 노인장기요양보험에 해당하는 비용을 전액 본인 부담하여 입소하기를 원하는 자 (단, 시설 정원 내에서 가능)		

2.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서비스 신청자(이하“입소자”이라 함), 신원인수인(보호자), 서비스제공자(이하 “홍익요양원”이라 함)라 하며,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제1조 (계약 목적)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부양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제2조 (계약 기간)

- ① 입소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장기요양 인정기간으로 한다.
- ② 입소 첫날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까지를 계약일로 하거나, 입소자와 합의에 의해 입소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다.
- ③ 계약기간 중 등급변경이 되거나, 이용료 등 비용 변경이 있을 경우,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서비스의 내용) 입소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비스 종류	서비스 내용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청결도움, 머리감기도움, 몸단장, 옷갈아입기도움, 신체청결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화장실 이용도움, 이동도움, 신체기능 유지증진, 산책(외출)동행
인지관리 및 의사소통	• 인지관리지원, 의사소통 도움
기능회복훈련	• 신체·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 신체기능훈련·기본동작훈련·일상생활동작훈련, 인지기능향상훈련, 여가·정서프로그램, 물리(작업)치료
건강과 간호관리	• 건강상태관찰 및 측정, 건강관리, 간호관리, 응급서비스, 임종간호
사례관리	• 사례관리
영양 및 급식관리	• 급식관리, 위생관리
시설환경관리	• 침구·린넨 정리, 환경관리, 물품관리, 세탁물 관리
복지일반관리	• 복지일반관리

제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입소자의 건강상태, 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입소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3.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권리
4. 시설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의무
3.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시설에 통보할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시설에 통보할 의무
5.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제5조 (월 입소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 ① 장기요양서비스의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 의한다.
- ② 장기요양서비스 급여 수가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시 수가
 2. 비급여 :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침실이용료, 이·미용비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구 분	항목	금액/비율	내역
장기요양 급여	장기요양보험수가	공단부담 80%/88%/92%	등급에 따라 비급여를 제외한 급여비용의 80%/88%/92%를 장기요양보험공단에서 지급
	본인부담금	본인부담 20%/12%/8%	급여비용의 20%/12%/8%를 본인이 부담
비급여(전액 자부담)	식재료비	9,000원/일	1식 3,000원, 1일 3식
	간식비	1,000원/일	1회 1,000원, 1일 1회
	이·미용비	실비	외부 이·미용사 이용 시에만 부담 (자원봉사자 서비스는 무료)
	상급침실이용료	2인실 5만원/월, 1인실 10만원/월	상급침실 이용 시 추가 비용

< 입소자 자격별 본인일부부담 비율 >

구분	시설급여
일반	20%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12%(60% 감경 시), 8%(40% 감경 시)

제6조 (계약의 해제)

- ① 입소자 또는 보호자는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을 시설에 통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② 시설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다음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입소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고, 시설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 급여비용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입소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7조 (이용료 변경에 관한 서면 통지)

- ① 시설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 기일 15일 전까지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 또는 유선, 전자송신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이용료 변경 사유)

- ① 장기요양등급의 변화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기간 중이라도 급여변경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단, 이때는 시설에 상담 및 서면으로 서비스 변경 요청을 하여야 하며, 시설은 이를 수용하여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여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비급여비용(식재료비, 상급침실료, 이·미용비)이 변경되었을 때
 3.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4. 입소자의 건강보험 자격이 변경되었을 때

제12조 (특별 요양보호 서비스기준 및 비용)

①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으며 특별보호 조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경우 입소자 및 보호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적절한 개입을 진행한다.

② 입소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1.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가. 시설이용 입소자 또는 직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나. 대체할만한 돌봄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2.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날짜 및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 및 신체적 제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입소자나 가족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린다. 또한 신체적 제한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최단 시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대안이 생기는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3.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다만, 신체적 제한은 의사의 소견 또는 진단을 받아 이루어져야 하며, 신체적 제한 조치 시 별도의 관찰기록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4. 합숙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같은 방을 사용하는 입소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1인용 또는 2인용 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이실할 경우 가족에게 사유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서면 동의를 얻는다. 그러나 시설의 운영 사정에 의한 경우는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1.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인 특별침실에서 전문 의료서비스(산소공급,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2.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인 특별침실에서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3.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특별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실에 대한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서면 동의를 얻는다. 그러나 본 시설의 사정에 의한 경우는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4.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 소모품에 관해서는 사전에 본인이나 가족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은 후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④ 감염병 등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 또는 감염병 의심자가 발생한 경우, 다른 입소자 및 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별도의 격리공간(특별침실)에서 특별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조치는 관할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의 지침에 따라 시행하며, 격리 사유, 기간, 조치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입소자 및 가족에게 즉시 통보한다.
3. 감염병 격리를 위하여 특별침실로 이동할 경우, 본인이나 가족에게 격리의 필요성 및 사유를 충분히 설명한다. 이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추가 비용은 부과하지 않는다.
4. 감염병 관리를 위해 필요한 개인보호장비, 소독용품 등 특별 방역물품에 관해서는 시설에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입소자 개인이 요청하는 추가적인 물품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 후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할 수 있다.

제13조 (의료서비스 처리 절차)

① 의료담당자 활동사항

1. 매일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2.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 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협력한다.
3.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정확하게 수행하도록 한다.
4. 입소자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 혹은 촉탁의와 즉시 협의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②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1. 본 시설은 입소자의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 또는 촉탁의가 주 2회 방문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도록 운영한다. 이는 본 시설의 특화된 의료서비스이다.
2.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3. 협약의료기관의 의사 또는 촉탁의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협약의료기관의 의사 또는 촉탁의는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의약품 처방을 진행하고 이에 따른 본인부담의 치료비는 장기요양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③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1. 입소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2.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 가. 병원진료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입소자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입소자 상태를 파악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3.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원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입소자를 인계한 후 귀원한다. 동행 직원은 입소자의 건강상태 및 응급상황 발생 경위를 의료진에게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제14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① 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 입소자 외에는 이용할 수 없으며 입소자의 보호자가 부득이하게 일시 이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시설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화재예방 및 전기안전에 관한 사항

1. 입소자의 안전과 화재예방을 위하여 개인 전기제품(전기장판, 전기히터, 전기포트, 헤어드라이기 등)의 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 의료기기나 보조기구 등 필수적인 전기제품은 사전 승인 후 안전점검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

2. 멀티탭 및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을 금지하며, 전기시설물의 임의 개조나 변경을 금지한다.

3. 시설 내에서 화기(라이터, 성냥, 양초 등) 사용 및 소지를 엄격히 금지한다.

③ 시설 비품 사용에 관한 사항

1. 시설 비품인 휠체어 및 워커 등은 입소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하므로 외부이나 외출 시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2. 입소자가 필요로 하는 개인 보조기구는 개인이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 소유임을 표시하고 관리 책임은 본인 또는 가족에게 있다.

3. 입소자가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훼손한 때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적인 마모나 노후화에 따른 파손은 변상 책임이 없다.

④ 면회 및 방문에 관한 사항

1. 입소자의 안전과 숙면을 위하여 면회시간은 평일 10:00~17:30까지로 제한하여 운영한다. 주말 및 공휴일의 면회시간은 별도로 공지한다.

2. 감염병 발생 또는 확산 방지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면회를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비대면 면회(영상통화 등)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소자 및 가족에게 사전에 안내한다.

3. 면회객은 면회록에 서명하여야 하며, 면회 시 입소자의 안전과 안정을 위해 직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4. 감염병 의심 증상이 있는 방문객은 면회를 자제하여야 한다.

⑤ 귀중품 및 개인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

1. 귀중품(현금, 금은보화, 고가의 장신구, 유가증권 등)은 가정으로 가져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개인부주의 또는 관리소홀로 발생할 수 있는 분실 건에 대하여 시설에서는 책임을 질 수 없다.

2. 부득이하게 시설에서 귀중품을 보관해야 할 경우, 입소자 또는 가족은 귀중품 보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설에 맡겨야 하며, 시설은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다만, 고액의 현금

이나 고가의 귀중품은 보관을 거부할 수 있다.

3. 개인 소지품(의류, 신발, 세면도구 등)은 분실 방지를 위해 반드시 이름을 기재하고, 개인 소지품의 관리 책임은 입소자 본인 또는 가족에게 있다.

제15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은 입소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 ①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② 시설 종사자가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③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④ 시설 종사자의 학대로 인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제16조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 시설에서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①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 ② 시설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③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④ 입소자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